

문서번호	감사담당관-6070
결재일자	2016.6.2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725호

주무관	감사팀장	감사담당관	부구청장	구청장
이명옥	정종모	한석규	김경호	06/22 김기동
협 조	의회법무팀장      신수일 주무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은상			

##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정비 계획(안)



광진구  
(감사담당관)

#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정비 계획(안)

상위법인「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않도록 적극행정 면책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## 1 관련근거

- 「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 
(시행 2016. 3. 11, 행정자치부훈령 제67호, 2016. 3. 11. 일부개정)

## 2 정비방향

- 우리구 공무원이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주민불편,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기반 강화.
  - 적극행정 면책의 정의 구체화 및 요건의 명확화
  - 징계양정 통보서 작성 시기 현실화
  - 적극행정 면책 신청기한 완화 등

### 3] 개정 사유

#### ●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개정

- 「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(표준안)」  
(2016. 3. 11.) 반영
- 규정 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

### 4] 주요 내용

- 목 적 :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절차상 하자나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 대상과 요건, 운영절차 등을 정함.

#### ● 연 혁

- 제 정 : 2012 .02. 10 ( 훈령 제125호)

#### ● 주요 정비내용

- 적극행정 면책대상행위를 “비효율·손실”에서 “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”으로 정의 구체화(제4조)
- 면책요건을 공익성, 타당성, 투명성에서 공공의 이익, 적극적인 업무처리, 고의·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으로 변경 (제6조)
- “징계양정을 결정한 때”에서 “징계양정을 결정하기 전”으로 변경(제12조)
- 적극행정 신청기한을 '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'에서 '감사 결과 처분지시 이전'까지 확대(제13조) 등

## 5] 참고사항

- **관련법규** :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
- **예산조치** : 해당 없음.
- **기 타**
  - 자치법규 심사의견 반영(기획예산과-6931, 2016. 5. 26.)
  - 신·구조문대비표
  - 입법예고 : 생략(조례와 규칙만 입법예고)
  - 규제심사 : 해당 없음.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.
  -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 없음.

## 6] 향후 계획

- **훈령 대장 등록, 구보게재 및 시행** ----- 2016. 6월.
- **기획예산과 자료입력 요청** ----- 2016. 6월.

- 붙임 1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 
2. 발령문 1부. 끝.